

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 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0. 2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주택단지의 부설주차장은 「주차장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수하되, 지역 주차수요의 특성,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바,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,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인용된 법률에 대한 준용조문 정비(안 제6조제1항)

나.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규정 정비(안 별표2 제5항)

•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

(현행) 85㎡이하 55㎡당 1대, 85㎡초과 43㎡당 1대, 원룸 세대당 1대

(개정) 85㎡이하 88㎡당 1대, 85㎡초과 68㎡당 1대, 원룸 세대당 0.7대

다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0. 2. ~ 10. 10.(8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3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
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도로교통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영 제8조”를 “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[별표6]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주차구획선의 표시등)”을 “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차장법 시행”을 “시행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같은법 제9조”를 각각 “같은 법 제9조”로 한다.

별표 2의 제5항 중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“85㎡이하 55㎡당 1대”를 “85㎡이하 88㎡당 1대”로 한다.

나. “85㎡초과 43㎡당 1대”를 “85㎡초과 68㎡당 1대”로 한다.

다. “원룸 세대당 1대”를 “5원룸 세대당 0.7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주차장의 표지)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영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격을 준용하되,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.	제6조(주차장의 표지) ①----- -----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[별표6]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	제7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	②----- ----- -----
제1항 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3개월 단위로 선납	----- 제7조제3항에 따른 ----- 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주차구획선의 표시등) ① (생략)	제11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	②-----

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
제3조에 따른다.

제17조(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
범위) ①법 제19조제4항 및 같
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
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
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
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
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
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
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
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.

② (생 략)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
산정기준) ①법 제19조제6항에
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
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
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
법으로 산정한다

1. 2. (생 략)

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
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
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
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
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

----- 시행-----
-----.

제17조(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
범위) ①----- 같은
법 시행령 제7조제2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
산정기준) ①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같은 법 제9조-----

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 4. (생략)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,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같은법 제9조</u>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 4. 5. (생략) 【별표 2】 <개정2019. 02. 01>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(제15조 제1항 관련)	----- -----. 4.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제9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4. 5. (현행과 같음) 【별표 2】 <개정2019. 02. 01>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(제15조 제1항 관련)
---	--

시 설 물	설 치 기 준	시 설 물	설 치 기 준
4.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, 다중주택, 공관(公館)	○ 시설면적 50㎡ 초과 100㎡ 이하 : 1대 ○ 시설면적 100㎡ 초과 : 1대에 100㎡를 초과하는 50㎡당 1대를 더한 대수 $[1+\{(시설면적-100㎡)/50㎡\}]$	4.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, 다중주택, 공관(公館)	○ 시설면적 50㎡ 초과 100㎡ 이하 : 1대 ○ 시설면적 100㎡ 초과 : 1대에 100㎡를 초과하는 50㎡당 1대를 더한 대수 $[1+\{(시설면적-100㎡)/50㎡\}]$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 (기숙사는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	○ 85㎡이하: 55㎡당 1대 ○ 85㎡초과: 43㎡당 1대 ○ 원룸 세대당 1대	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 (기숙사는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	○ 85㎡이하: 88㎡당 1대 ○ 85㎡초과: 68㎡당 1대 ○ 원룸 세대당 0.7대
6.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, 관람장	○ 골프장 : 1홀당 10대 (홀의 수×10) ○ 골프연습장 : 1타석당 1대 (타석의 수×1) ○ 옥외수영장 : 정원 15 명당 1대 (정원/15명) ○ 관람장 : 정원 100명 당 1대 (정원/100명)	6.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, 관람장	○ 골프장 : 1홀당 10대 (홀의 수×10) ○ 골프연습장 : 1타석당 1대 (타석의 수×1) ○ 옥외수영장 : 정원 15 명당 1대 (정원/15명) ○ 관람장 : 정원 100명 당 1대 (정원/100명)
7.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 형은 제외한다), 발전시설	○ 시설면적 350㎡당 1대 (시설면적/350㎡)	7.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 형은 제외한다), 발전시설	○ 시설면적 350㎡당 1대 (시설면적/350㎡)
8. 창고시설 및 학생용 기숙사	○ 시설면적 400㎡당 1대 (시설면적/400㎡)	8. 창고시설 및 학생용 기숙사	○ 시설면적 400㎡당 1대 (시설면적/400㎡)
9. 그 밖의 건축물	○ 시설면적 300㎡당 1대 (시설면적/300㎡)	9. 그 밖의 건축물	○ 시설면적 300㎡당 1대 (시설면적/300㎡)